

의안번호 제6호

#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9. 2. 13.

##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의 안 제6호

제출연월일: 2019. 2. 13. 제 출 자: 논 산 시 장

#### 1. 제정이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논산시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교육비 지원에 따른 지원내용 및 대상(안 제3조~제5조)
- 다. 교육비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안 제6조)
- 라. 교육비 지원신청 및 지원 절차(안 제7조~제8조)
- 마. 교육비 반환 등(안 제9조)
- 바. 교육비 지원 사후관리(안 제10조)
- 사. 기타 시행규칙 및 준용규정(안 제11조~제1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1) 「헌법」 제31조 및 제117조
  - 2)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 「초・중등교육법」제10조 및 제30조의2
  - 3) 「지방자치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 2019. 1. 8. ~ 1. 28.
    - 나) 예고결과 : 붙임2 참조
  - 5)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 (041-635-3221)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립고등학교를 말한다.
- 3. "교육비"란 고등학생의 학부모(그 밖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 가. 법 제10조 및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 업료
  - 나.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
  - 다. 교과서비
- 제3조(교육비의 지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및 교과서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교육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지급 기준일 현재 논산시 관내 고등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2. 부모 등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 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절차) 교육비 지원절차는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교부절차에 의한다.
- 제9조(교육비 반환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와 학교운 영비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분기마다 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	관	j	부	ノ	+	성		명
<b>Q</b> ]	평	생	亚	육	과	장	조	영	경
안	교	육	지	원	팀	장	고	강	석
자	담		Ę	:}		자	김 (74	성 6-570	수 62)

### 붙임1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교육비 지원
- 나.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O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3조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O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1인당 1,113천원(수업료 729천원, 학교운영 지원비 284천원, 교과서비 100천원)
    - ※ 고1 ~ 2학년 : 충남도+시·군 재정분담(50% : 50%)
    - ※ 고3학년 : 충청남도교육감 부담(100%)

####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연도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일반회계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8,022,430
산출 기초	고등학생	1,442명x1,112,681원 =1,604,486	1,442명x1,112,681원 =1,604,486	1,442명x1,112,681원 =1,604,486	1,442명x1,112,681원 =1,604,486	1,442명x1,112,681원 =1,604,486	7,210명x1,112,681천원 =8,022,430

※ 학생 수는 매년 7~8월 중 충청남도교육청 다음년도 학교별 입학정원 결정에 따라 변동됨

#### 3.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계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8,022,430
시비(지방세)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8,022,430

#### 4. 작성자 : 친절행정국 평생교육과장 조영경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ā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8,022,430
5	국 비						0
7	기 금						0
5	는 비						0
٨	·] н]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8,022,430
세	출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8,022,430
	단체등이전 관에대한보조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8,022,430
재	원 조달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8,022,430
의존	소 계						
재원	보조금						
711 12	지방교부세						
	소 계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8,022,430
자체	지방세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1,604,486	8,022,430
수입	세외수입						
	공모사업						
7	지방채						
7	] 금						
공기업	법 특별회계						
기 (채무부	타 땀, 만자 등						

#### 붙임2

#### 입법예고시 의견제출 및 검토결과(답변)

#### □ 서면의견

- O 의견제출자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 O 의견 내용
  - 제7조 교육비 지원신청(①) 및 지급절차(②)를 학교로 직접 지원이 아닌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으로 지원 요청
  - ① 보조금 지원신청 변경에 대한 의견 [현행] 학교장→교육장(市)→시장 [변경] 학교장→교육감(道)→시장
  - ② 보조금 지급절차 변경에 대한 의견 [현행] 시장→학교장 [변경] 시장→교육감(道)→학교장
- O 의견제출 사유
  - 입법예고안대로 우리시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할 경우 교육청의 입장에 서는 총괄부서로서 업무 통일이 어려우며, 학교입장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임

#### [당초]

#### 제7조(지원신청 등)

-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u>거쳐 시장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u>각급</u>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수정]

#### 제7조(지원신청 등)

-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u>교육</u> <u>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u>하여야 한다.

#### □ 답변

- 보조금 지원신청 변경에 대한 의견
  - 보조금 지원신청은 현행과 같이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주체가 학교인 만큼 학교가 교육장을 거쳐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내용이나 목적에 부합하며 업무 일관성이 유지될 것임
  - ➡ 현행 조례안대로 교육장을 거쳐 신청하도록 함이 타당
- 보조금 지급절차 변경에 대한 의견
  - 현행대로 지급하는 것이 변경안보다 절차상 간단하고 효율적이며, 일선학교에서도 市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업무 가중이나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의견('19. 1. 17. 무상교육 관련 회의중 학교관계자 발언) 또하 변경을 요구하 사하으 교육가 면이로 보조구이 지원되어 우리시
    - 또한 변경을 요구한 사항은 교육감 명의로 보조금이 지원되어,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일반자치권과 교육자치권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임
  - ➡ 현행 조례안대로 직접 학교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성명(단체명) : 이○○(논산계룡교육지원청)

○ 주 소 : 논산시 관촉로 253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논산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이 (논산계룡교육지원청 \_\_\_\_)

O 주 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253

○ 전 화 번 호 : 041-730-7170

조례안 내용	의 전	비고
따른 시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 하여 논산계통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u>각급</u>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원절차가 통일되지 않아 총괄부서의 전체 사업판리 및 현장 지원업무의 일판성 유지가 어려우며, 〇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입장에서는 논산시와 계룡시를 관할함에 있어서 역시 지원절차가 통일되지 않아 업무의 일판성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〇 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의 주체는 학교가 되며, 예산지원 경로가 도교육청, 시·군으로 구분될 경우 학교 현장의 업무 가중 및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습니다. 〇 따라서, 제7조(지원신청 등)에 대하여	
	①항 '논산계통교육지원청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를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로, ②항 '시장은 각급 학급 학교의 장에게 지원 급을 지급'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으로 의견을 제출하오니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3 도내 타시군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군	추진현황	비고
1	천안시	3월중 의회 상정 처리	
2	공주시	2월중 의회 상정 처리	
3	보령시	3월중 의회 상정 처리	
4	아산시	2월중 의회 상정 처리	
5	서산시	2월중 의회 상정 처리	
6	계룡시	1월말 의회 의결	2월중 공포 예정
7	당진시	1월말 의회 의결	2월중 공포 예정
8	금산군	1월말 의회 의결	2월중 공포 예정
9	부여군	2월중 의회 상정 처리	
10	서천군	1월말 의회 의결	2월중 공포 예정
11	청양군	1월중 의회 의결	1. 30. 공포
12	홍성군	3월중 의회 상정 처리	
13	예산군	1월중 의회 의결	1. 30. 공포
14	태안군	3월중 의회 상정 처리	

#### 참고1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 교육기본법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중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u>관할 구역의 자치사무</u>와 <u>법령에 따</u>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 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초・중등 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 1. 초등학교·공민학교
-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4. 특수학교
- 5. 각종학교
- 제10(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 2.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 □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제7조(반환 등)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 ②설립자가 같은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보다 전출하는 학교의 수업료 징수액이 많은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의 차액을 반환한다.
  - ③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 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한다.
  -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

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할 때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해당 기(월) 시작일 또는 입학 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반환한다.

#### 표준조례제정안

### ○○시·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 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란 ○○시/군 내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2. "학생" 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비 및 교과서비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제외 금액의 세부내용은 00시장/군수가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계획수립 등) 00시장/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수업료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교육감을 거쳐 00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00시장/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자격의 변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00시

장/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00시장/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00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분 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00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00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00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